

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파주시정 발전과 한미친선에 공로가 있는 미육군 제2사단 공병여단장이 이임(2000. 7. 7예정)함에 따라 그간의 현저한 공로를 기리고 한·미간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미육군 제2사단 공병여단장(토마스 케이 리틀필드2세)에게 명예시민증서와 기념품 수여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

제2조 (증서수여) ①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미리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- 명예시민증서수여는 동 조례에 의거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바,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은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 별첨 공적조서와 같이 파주시정 발전과 한미친선에 공로가 현저한 미육군 제2사단 공병여단장(토마스 케이 리틀필드2세)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